

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2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7년 4월 19일
발 의 자 : 김창현 의원 외 인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령에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,

당초,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심의)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변경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(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) 제38조(정례회)

○ 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제19조의 4(정례회의 집회일 등)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.

다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” 를 삭제하고, 동조 제2항 중 “정례회에서는” 다음 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” 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· 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</u>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	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	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</u>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